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정관

제정 2006년 1월 18일
제1차 개정 2007년 5월 14일
제2차 개정 2008년 12월 30일
제3차 개정 2017년 10월 18일
제4차 개정 2019년 6월 27일
제5차 개정 2020년 4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정의) ①이 법인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 라 한다)라 한다.
②이 정관에서 "겨레말" 이라 함은 우리 민족이 써왔거나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③이 정관에서 "겨레말큰사전" 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 사전을 말한다.

제2조(목적) 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고 모국어공동체의 발전과 남북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편찬사업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편찬사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편찬사업을 위한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 라 한다)의 운영
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발간, 개정 및 증보
4.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위하여 남북 및 해외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의 조사 · 채집 · 연구 · 보존 · 전산화
5.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편찬사업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7. 편찬사업회 또는 편찬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④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제7조(상임임원) ①상임임원은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중에서 2인 이내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감사는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임명하고,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비상임일 경우 이사장은 업무의 일부를 부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상임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전결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편찬사업회의 업무와 운영 및 재산·회계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대한 감사
⑥감사는 제5항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일부장관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령·정관·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편찬사업회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제12조(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나머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임원은 편찬사업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편찬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다만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남측편찬위원회로 하여금 사전편찬과 관련한 실무적 · 기술적 ·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하게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편찬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이사회의 회의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의 운영 등을 위하여 편찬사업회 소속 직원 중에 이사회 간사를 둘 수 있다.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의사 등) ①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과 편찬사업회 재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이사회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건의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이 자신과 관계되는 경우

제17조(회의록) ①이사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전원과 감사가 기명 · 날인한다.

②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

제4장 위원회

제18조(위원회 구성 및 정의) ①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한 남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편찬사업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이 장에서 “위원회” 라 함은 남측편찬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 모두를 말한다.

④이 장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 이라 함은 남측편찬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을 말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사회가 인준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1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들을 협의하고 심의한다.

제2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남측편찬위원회) ①남측편찬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한다.

②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남측편찬위원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한 남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북측편찬위원회와의 회의에 관한 사항
2.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남북한간 협의에 필요한 학술적 판단에 관한 사항
3.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실무적 · 기술적 · 절차적인 사항 등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장 집행기구

제26조(사무처) ①편찬사업회는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에는 경영기획실과 편찬실 등을 둔다.

제27조(기타 기구 등) 편찬사업회는 특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특별기구

제28조(남북공동사무소) ①편찬사업회는 남북공동사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남북공동사무소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기타 남북공동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후원회) ①편찬사업회는 법 제15조 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재원조달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과 역할,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기본재산)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및 단체가 출연한 부동산 또는 이들이 출연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중 편찬사업회의 부동산 임차보증금(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31조(재산의 관리) ①편찬사업회는 기본재산을 증여, 매매, 교환, 임대, 각종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포기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편찬사업회가 제1항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편찬사업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재산의 유지 ·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운영재원) 편찬사업회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
2. 편찬사업회의 재산으로 발생한 과실수입 및 각종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제33조(수익사업) 편찬사업회는 제2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제4조 제6호에 의거하여 편찬사업회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내용 · 범위 · 조건 및 절차 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34조(저작권 등의 귀속) ①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및 발간에 따른 저작권은 편찬사업회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 중 이루어진 저작권, 특허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특별히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찬사업회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조(결산보고) ①편찬사업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재산목록·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편찬사업회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편찬사업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9조(정관의 변경) 편찬사업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결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정의 제정) 편찬사업회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해산 및 청산) ①편찬사업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편찬사업회가 해산되었을 때 잔여재산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설치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법인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편찬사업회는 사단법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승계한다.

제3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편찬사업회의 임원은 사단법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임원이 그 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편찬사업회의 위원은 사단법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원이 그 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